

# 자치법규의 일괄정비를 위한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2. 12. 7. 화성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22. 12. 12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1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22. 12. 20. 상정, 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(예산법무과장 이택구)

### 가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 제·개정 사항 미반영 등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괄정비하여 입법경제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.

### 나. 주요내용

- 기관 및 직제 개편 미반영 사항 정비
- 상위법령 제·개정 등에 따른 인용 법령 제명 및 조문 변경
- 띄어쓰기, 일본어 투 표현, 일본식 한자어,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 등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윤정자)

-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2. 12. 7. 화성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22. 12. 12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1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22. 12. 20. 상정, 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(행정지원과장 김성현)

### 가. 제안이유

-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특별휴가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등 변화된 환경을 복무에 반영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한글 맞춤법(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-12호, 2017. 3. 28. 시행) 부록의 문장부호론에 따른 맞춤법 교정(안 제20조)
  - 쌍점의 앞은 붙여 쓰고 뒤는 띄어 쓴다(시와 분, 장과 절 등을 구별하거나, 의존명사 ‘대’ 가 쓰일 자리는 제외)
-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휴식권 보장,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장기재직휴가의 기준을 정비하여 그 취지에 맞게 운용(안 제20조)
  - (신설)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: **5일**
  - (수정)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: 10일 → **15일**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윤정자)

-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며, 직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대민행정 서비스 질 향상 등 건전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생략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 화성시 민생치안안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2. 12. 7. 화성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22. 12. 12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1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22. 12. 20. 상정, 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(자치행정과장 박형일)

### 가. 제안이유

- 현재 경기도를 포함하여 전국 245개 시·도 및 시·군·구에서 「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행정과 경찰, 소방서와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, 화성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민생치안 안정을 확립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시정을 구현하려는 것임.

### 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- 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(안 제2조 및 제3조)
- 위원 임기 및 위원장 직무(안 제4조 및 제5조)
- 협의회 운영(안 제6조)
- 실무협의회 구성, 비밀누설 금지 등(안 제7조 및 제8조)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윤정자)

- 행정과 경찰, 소방서와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안전과 민생치안의 안정을 확립하여 시민의 일상생활 보호와 지역사회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생략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 화성시 통·리·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2. 12. 7. 화성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22. 12. 12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1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22. 12. 20. 상정, 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(자치행정과장 박형일)

### 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라 읍·면·동 하부기관(통·리·반)의 설치는 조례로 정하고 있으나, 통·리·반장의 임명은 설치된 하부기관 소속인원의 임면에 관한 것으로 이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통·리장 임면사항은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.

### 나. 주요내용

- 상위법령 준수에 따른 정비
  - 화성시 통·리·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, 제4조, 제7조로 규정되어 있는 통·리·반장 임명을 위한 자격, 임명방안, 면직규정 등 임면에 관한 사항을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을 준수하여 규칙으로 제정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윤정자)

-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,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생략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 화성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2. 12. 7. 화성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22. 12. 12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1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22. 12. 20. 상정, 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(자치행정과장 박형일)

### 가. 제안이유

-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, 주민투표청구에 전자서명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한 「주민투표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### 나. 주요내용

-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(안 제3조)
- 개정법에서 주민투표 대상을 규정함에 따라, 조례의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(안 제4조)
-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 개정(안 제8조)
-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(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)
- 주민투표 청구인 전자서명 도입 명시(안 제8조 및 제10조)
-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기존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 삭제(안 제12조)
-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규정 사항에 따라 각각 조를 분리하여 규정(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)
- 조례정비에 따라, 조례상의 서식 삭제(제15조 삭제)
- 변경된 법에 맞게 인용 조항 변경(안 제16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윤정자)

- 주민투표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,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 화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2. 12. 7. 화성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22. 12. 12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1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22. 12. 20. 상정, 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(자치행정과장 박형일)

가. 제안이유

-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(2021. 10. 19.제정, 2023. 1. 1.시행) 및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2022. 9. 13.제정, 2023. 1. 1.시행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 목적(안 제1조)
-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(안 제2조부터 제11조까지)
-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(안 제12조)
- 고향사랑기금의 설치·운용(안 제13조부터 제24조까지)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윤정자)

-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,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생략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2. 12. 7. 화성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22. 12. 12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1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22. 12. 20. 상정, 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(세정1과장 민영섭)

### 가. 제안이유

-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「이태원 사고」의 발생으로, 해당지역인 서울특별시 용산구를 “특별재난지역”으로 선포(2022.10.30.)
- 해당 사고로 고통 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 필요 ⇨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기준 마련[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-2488(2022. 11. 2.), 4561호(2022. 11. 7.)] 통보에 따라,
-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의거,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의 2023년 정기분 재산세, 주민세(개인분), 주민세(사업소분 중 개인사업자), 2022년 2기분 ~ 2023년 자동차세(소유분)를 감면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감면대상자: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(부모, 배우자, 자녀), 유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

○ 세목별 감면내역

(1) 주민세

- 상기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(「지방세법」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) 면제

(2)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

-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2022년 2기분 및 2023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

(3) 재산세(「지방세법」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, 이하 같다)

-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 면제

(4) 기타

-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, 기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
-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윤정자)

-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고, 해당 사고로 고통 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실질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 2022년도 수시(4차)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2. 12. 7. 화성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22. 12. 12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1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22. 12. 20. 상정, 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(회계과장 이호경)

### 가. 제안이유

○ 국화도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

- 국화도 내 공공수역의 수질을 개선하고 공중 위생 향상 및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소규모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○ 재산목록(취득재산)

### 2022년도 수시(4차)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 재산 목록

(단위 : m<sup>2</sup>, 천원)

일련 번호	재산표시			재산가액	취득시기	취득사유	소관부서
	구분	소재지	수량(면적)				
계	토지		1,487.9	193,427			
	건물		144.71	2,758,000			
	기타		-	-			
1	토지	우정읍 국화리 120번지	1,487.9	193,427	2023	국화도 소규모	하 수 과
	건물	우정읍 국화리 120번지	144.71	2,758,000	2024	공공하수도	
	기타	-	-	-	-	설치사업	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윤정자)

#### ○ 국화도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

- 본 계획안은 국화도 내 우정읍 국화리 120번지에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을 실시하여 방류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
- 국화도 생활오수의 적절한 처리로 공공수역의 수질을 개선하여 공중위생 향상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하는 등 적절한 계획안이라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